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58

발의연월일: 2021. 2. 26.

발 의 자:한병도·오영환·김민철

이용호 · 임호선 · 장경태

허 영・박홍근・양정숙

민병덕 · 이명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,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

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,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현행 법률의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출생신고가 어려 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규정상 모호한 목격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, 119구급대원의 출동 기록을 추가함으로써 취약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하려는 것임(안 제44조).

법률 제 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조제4항제1호 중 "분만에 직접 관여한"을 "분만을 목격한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작성되는 출동기록 중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출생신고의 기재사항) ①	제44조(출생신고의 기재사항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	4
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	
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	
러하지 아니하다.	
1. <u>분만에 직접 관여한</u> 자가 모	1. <u>분만을 목격한</u>
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	
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	
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
	률」 제22조에 따라 작성되는
	출동기록 중 출생사실을 증명
	하는 서면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